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418 발의연월일: 2024. 12. 12.

발 의 자: 안호영 · 윤준병 · 정을호

박희승 · 박홍배 · 이학영

이춘석 • 이원택 • 박 정

김주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 또는 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하고 있고, 정부는 각 부처에서 수집 생산하는 감시·예측 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 각 분야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에는 감시·예측 정보 등이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는 실정이므로, 법정 지원대상 계획이나 대책에 활용된 실적과 활용할 계획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기반이 되어야 지원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 것임. 아울러,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의 총괄·지원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를 수집하여 공동활용을 촉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온, 강수량 등 기후요소 중심의 기후변화 상황지도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반의 농작물의 변화 예측정보 등 영향정보를 추가하여 실제로 변화하는 작물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확대·작성하여 배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상청장이 공동활용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후위기 감시 예측 정보를 수집 및 활용 촉진하도록 하고, 기후위기 대책 지원을 위 하여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배포하도록 의무화하며,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활용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도록 함(안 제13 조).

또한, 기후위기 대책 지원을 위하여 감시·예측 정보 등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화 함.(안 제16조).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제1항 및 이법 제16조제1항·제2항을 위한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 ④ 기상청장은 제16조제1항의 기후위기 대책 지원을 위하여 기후변화 감시정보 및 표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분야별, 지역별 맞춤형기후변화 영향정보를 포함하는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 ⑤ 기상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동활용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활용 및 제4항에 따른 기후변화 상황지도의 작성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등이 지원 대상 계획 및 대책에 활용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활용실적과 계획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정보 등의 제공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 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제13조(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①・②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동	③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감시예
활용의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측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
	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
	<u>제1항 및 이 법 제16조제1항ㆍ</u>
	제2항을 위한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촉
	<u>진할 수 있다.</u>
<u><신 설></u>	④ 기상청장은 제16조제1항의
	기후위기 대책 지원을 위하여
	기후변화 감시정보 및 표준 시
	나리오를 기반으로 분야별, 지
	역별 맞춤형 기후변화 영향정보
	를 포함하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를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u><신 설></u>	⑤ 기상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분석
	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비용
	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u><신 설></u>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동
	활용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정

제16조(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정한다.

<신 설>

보의 수집·활용 및 제4항에 따른 기후변화 상황지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등이 지원 대상 계획 및 대책에 활용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활용실적과 계획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 등의 제 공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